

의안번호	2208408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5.3.31.
추계번호	25B1105

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3. “오염물질”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바이러스 및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조 (정의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조에 따라 오염물질의 정의에 바이러스 및 떠다니지 않는 입자상물질이 추가될 경우, 오염물질 관리대상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정의에 바이러스 및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는 입자상물질을 추가하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오염물질이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⁾
 - 환경부는 「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」 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 및 실내라돈

1)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과 같음 (참고자료 1 참고)

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해당 시설의 2025년 예산은 79억 6,100만 원임

- 안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오염물질로 추가 지정되는 바이러스 및 입자상물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추가로 지정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참고자료 1 오염물질(제2조 관련)

1. 미세먼지(PM-10)
2. 이산화탄소(CO₂;Carbon Dioxide)
3. 폼알데하이드(Formaldehyde)
4. 총부유세균(TAB;Total Airborne Bacteria)
5. 일산화탄소(CO;Carbon Monoxide)
6. 이산화질소(NO₂;Nitrogen dioxide)
7. 라돈(Rn;Radon)
8.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;Volatile Organic Compounds)
9. 석면(Asbestos)
10. 오존(O₃;Ozone)
11. 초미세먼지(PM-2.5)
12. 곰팡이(Mold)
13. 벤젠(Benzene)
14. 톨루엔(Toluene)
15. 에틸벤젠(Ethylbenzene)
16. 자일렌(Xylene)
17. 스티렌(Styrene)